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시달

1. 관련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(안전관리자)
- 나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
- 나. 산업안전과-3939(2016.9.7) 「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에 대한 지침 시달.
- 2. 위 관련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에 있어 기존 지침과 최근 개정법에 따른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3. 이에, 붙임과 같이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니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침 지침 시달 1부. 끝.



수신자 지방관서(산재예방지도과)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산재예방보상 전결 2020.3.10. 산업안전과장 **고광훈** 주무관 시설사무관 김영남 류경호 정책국장 박영만 현조자

시행 산업안전과-1053

(2020. 3. 10.)

접수

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 / www.moel.go.kr 우 30117 과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

전화번호 044-202-7728 팩스번호 044-202-8092 / kyn589@korea.kr / 비공개(5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